

**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(김인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49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6일
발 의 자 : 김인호 의원 (1명)
찬 성 자 : 김소영, 노승재, 안광석,
김호진, 최영주, 김춘례,
박기재, 오한아, 황규복
의원 (9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중 창동운동장(도봉구 창동 1-24)의 체육 시설이 동북권 체육공원 부지로 이전되며 시립체육시설이 아닌 서울시 도시공원(다락원체육공원, 도봉구 창포원로 45)으로 편입 됨에 따라 이용료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할 필요성이 대두됨.

2. 주요골자

- 창동운동장 체육시설 이용료 등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함(안 별표3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창동운동장란을 삭제한다.

같은 표 비고란 중 “10. 창동배드민턴장 전용사용료는 별표 2의 제1호 개인연습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이다.” 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	개정안					
[별표 3] 전용사용료(제7조제1항 관련)						[별표 3] 전용사용료(제7조제1항 관련)					
시설		체육경기	체육행사	공공·문화 예술·일반 행사	기타 사용	시설		체육경기	체육행사	공공·문화 예술·일반 행사	기타 사용
창동 운동장	추구 장	1일	120,000 ~156,000	180,000 ~234,000	288,000~ 374,400	<삭 제>					
		2시간	48,000 ~62,400	72,000 ~93,600							
	배드민턴장 (4시간, 14면)		180,000~234,000								
	실내체육관 (3시간)		165,000~214,500								
비고	1.~9.(생략) 10. 창동배드민턴장 전용사용료는 별표 2의 제1호 개인연습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이다.					비고	1.~9.(현행과 같음) <삭 제>				